[서식 (4)]

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.

※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(합계 30만원 이상)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.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1.11.15 - 2021.11.29
2. 대상자

순번	자동차 등록번호	소유주 명	주민(사업자)번호	금액(단위:원)	체납기간
	자동차의 종류	주	소		
1	22무0454	길*은	860703 - *******		. . ~ 2021.11.15
	승용차	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340번길 20			
2	67오8921	정*봉	540216 - *******		. . ~ 2021.11.15
	승용차	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14번길 28			
3	81우1643	이*균	720324 - *******		. . ~ 2021.11.15
	화물차	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207			
4	41루1815	유*현	960812 - *******		. . ~ 2021.11.15
	승용차	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123번길 16-13			
5	55어7139	오*재	680310 - *******		. . ~ 2021.11.15
	승용차	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30			

2021년 11월 15일

대전동부경찰서장